

공

고

◎ 대구전파관리소공고 제2026-22호

전파법을 위반한 시설자에 대하여 아래의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우편(배달증명)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3일

대구 전 파 관 리 소 장

1.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

성 명	허가번호	주 소	위반내용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이오오	42-2023-60-0000060	포항시 남구 오천읍	무선국 검사불응 (3차위반)	무선국 허가취소

2. 근거법령: 전파법 제24조(검사), 제25조(무선국의 운용) 및 제72조(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)

전파법시행령 제118조(행정처분의 기준)

3. 처분일자: 2026. 8. 20.(목) 10:00

4. 청문장소: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(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)

5. 참고사항

가.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“의견제출서”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청문(의견제출)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나.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.

○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북본부: ☎053-766-9001 포항사업소: ☎054-282-2367

다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(☎053-749-2834, 팩스053-749-282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